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0-137

제출년월일 : 2020. 10.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구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마포복지재단 설립에 따라 그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단 설립 목적 및 근거 명시(안 제1조 ~ 제2조)
나.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 및 범위(안 제3조)
다.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재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정관변경, 자료제공 요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마. 공무원 파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주요 토의과제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2)「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 기준)

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4)「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20. 9. 10. ~ 9. 30. (제출된 의견 없음)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원안 동의

3)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 해당없음

4)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해당없음

5)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 동의

6) 제1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20.10.6.)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구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단의 설립)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

제3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자원의 발굴 및 연계에 관한 사업
2. 사회복지분야 관련 조사·연구
3.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간 교류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

4. 민·관 협력 확대 및 복지공동체 조성

5.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

6. 그 밖에 구청장이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재원)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그 밖의 수입금

②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본재산 운용 및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법인·단체, 개인의 기부금품

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정관 등) ①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자료제공 요청 등) ① 재단은 구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공받은 자료를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7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제8조(공유재산 무상 사용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추계 요약

가.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1) 비용발생 요인 :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재원)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마포복지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운영에 관한 연도별 소요예산(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및 재단설립초기비용) 및 세입내역(재단)

나. 비용추계기간 : 2021. 1. ~ 2025. 12.(60개월)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이후 계속)	합계
세입	이자수입		-	33,200	49,800	66,400	83,000	232,400
	나눔네트워크협약 지원비		30,000	30,000	30,000	-	-	90,000
	소계(a)		30,000	63,200	79,800	66,400	83,000	322,400
세출	기본재산		2,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	5,000,000
	보통재산	인건비	174,134	348,888	359,006	369,417	380,131	1,631,576
		운영비	234,714	103,102	104,236	105,382	106,542	653,976
		사업비	65,800	110,800	198,800	198,800	198,800	773,000
	소계(b)		2,474,648	1,562,790	1,662,042	1,673,599	685,473	8,058,552
□ 총 비용(a-b)			2,444,648	1,499,590	1,582,242	1,607,199	602,473	7,736,152

※인건비 상승분(공무원처우개선율2.9%) 및 물가상승율(1.1%) 반영/ 21년 운영비는 초기설립비용 포함

※세입은 재단수입으로 기본재산출연금의 이자수입 및 서울공동모금회 협약지원비 반영

4. 재원조달 방안

구분 \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자체수입	지방세수입등	2,444,648	1,499,590	1,582,242	1,607,199	602,473	7,736,152

5. 덧붙이는 의견 : 구체적인 세입 및 세출은 차후 변경 될 수 있음

6. 작성자 :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우정욱 (☎ 3153-8803)